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23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김위상・김 건・김기웅

임종득 • 정성국 • 우재준

유용원 · 조경태 · 이철규

강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3조). 법률 제 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 중 "2023년"을 "203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 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u>2023년</u> 12월 31일에 만	2 <u>033년</u>
료된다.	<u>,</u>